



# 보도자료

보도일시	<b>2010. 05. 19(수) 15:00</b>		
배포일시	2010. 05. 19(수) 10:00	담당부서	국고국 회계제도과
담당과장	회계제도과장 박성동 (2150-5210)	담당자	김영현 사무관 (2150-5226)

## 제 목: 2010년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계획 마련

- ◆ 기획재정부는 5월 19일(수) 제1차 계약제도개선심의위원회(위원장: 기획재정부 제2차관)의 심의를 거쳐
  - 2010년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음
- ◆ 기획재정부는 2009년에 이어 재정운용의 공정성·투명성·효율성 제고 및 계약제도 관리체계 정비 등을 위해
  -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제도개선 및 계약제도 운영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며
  - 추진과제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중 회계예규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임

□ 국가계약제도는 재정지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경제 활성화 등 주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

- 국가계약제도는 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에도 준용되는 등 재정운용의 핵심 수단

\* 향후 기타공공기관에도 국가계약법령 적용이 확대될 예정

□ 국가계약은 재정집행규모 및 제도 등의 확산효과 측면에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

- 정부계약(국가, 지자체, 공기업 포함) 규모는 '09년도 기준으로 122조원(GDP의 약 11.5%) 수준

(단위 : 조원)

	'05년	'06년	'07년	'08년	'09년
· GDP 규모(A)	865.2	908.7	975.0	1,026.5	1,063.1
· 정부계약규모(B)	83.2	83.8	92.0	100.9	<b>122.2</b>
국가 및 지자체	53.5	51.3	52.1	61.1	71.2
공공기관등	29.7	32.5	39.9	39.8	51.0
비중(B/A, %)	9.6	9.2	9.4	9.8	<b>11.5</b>

\* 자료 : 중기청 「공공기관 구매실적(물품, 용역, 공사 포함)」

- 특히 건설시장의 경우 공공부문의 규모가 '09년 58.5조원으로 국내건설시장 118.7조원의 49% 수준

□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계약 제도의 공정성·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

- 2010년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약제도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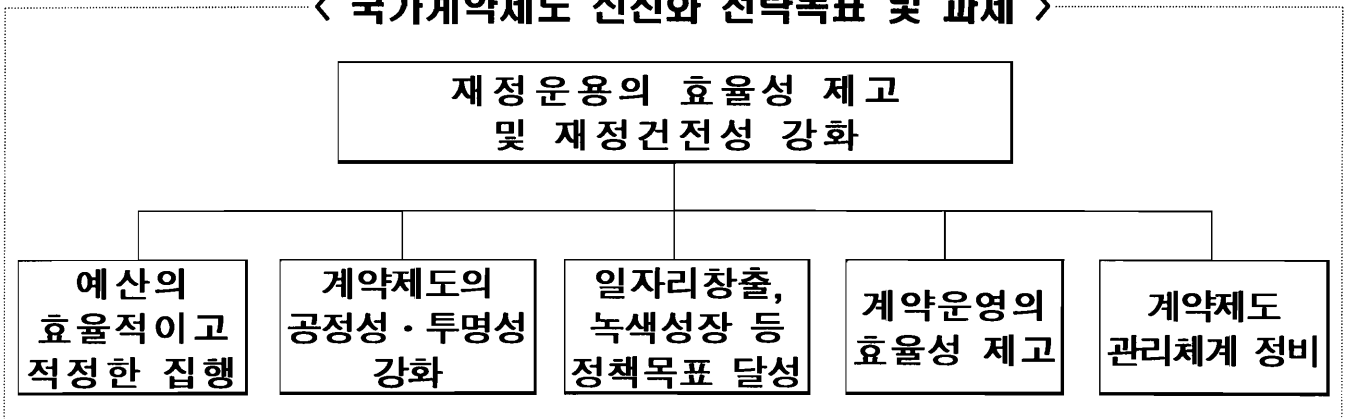
□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제도 선진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

- 「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 강화」라는 전략 목표 하에 5개의 주요 전략과제를 선정하고
- 주요 전략과제별 세부개선과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

□ 이번 국가계약제도 선진화를 위한 주요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음

- ①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집행
- ② 계약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
- ③ 일자리 창출, 녹색성장,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목표 달성
- ④ 입·낙찰제도 개선을 통한 계약운영의 효율성 제고
- ⑤ 국가계약제도 관리체계 정비

〈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전략목표 및 과제 〉



□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「2010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계획」의 주요 전략과제에 대한 세부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

①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집행

-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부실원가계산 방지
- 공사원가 산정시 간접공사비에 적용되는 제비율을 현실화하여 적절한 예정가격 작성 지원
- 장기계속사업시 공사의 완성도,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심사·평가하여 차기계약체결 여부 검토 등 관리를 강화

## ② 계약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

- **청렴계약체결을 의무화**하여 입찰참가자의 담합, 뇌물제공 등 불공정행위 방지

\* 청렴계약 : 관계공무원·입찰참가업체가 입찰·계약체결·계약이행과정에서 뇌물수수,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(계약해제·해지,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)를 감수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

- 지자체, 공기업 입찰에서 뇌물제공으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해 **국가기관의 입찰에도 참가자격을 제한**하도록 하는 등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제고
- **일정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및 계약 상대자선정의 적정성을 심사**하기 위한 장치 마련 검토

## ③ 일자리창출, 녹색성장, 중소기업지원 등 정책목표 달성

- **고용확대기업, 녹색성장정책 참여기업에 대한 계약제도상 인센티브 부여 방안**을 마련하고

\* (예시)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등에게 PQ·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 가점 부여, 계약보증금 감면, 선금지급 확대 등 검토

- **중소기업이 포함된 공동수급체 우대제도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 방안** 검토

\* 조달청은 소기업이 10%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0.5점 가점 부여

#### ④ 입·낙찰제도 개선을 통한 계약운영의 효율성 제고

- 턴키공사에 대한 타당성 심사제도를 개선하여 턴키방식이 효율적인 공사에 적용되도록 하고
  - 입찰참가자수 확대, 가격경쟁 활성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
-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시 발주기관의 심사부담 경감 등 심사 내실화 및 심사과정의 공정성·투명성 제고

#### ⑤ 국가계약제도 관리체계 정비

- 국가계약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「계약제도개선심의위원회」 구성
  -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개정사항, 개별법상 국가계약법령 특례 신설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
- 국가계약 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, 발주기관별 정보처리장치 연계 등 정보시스템 개선 추진

#### □ 기획재정부는

- 이번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과제별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
  - 하반기 중 회계예규,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

-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턴키제도개선T/F 등 세부과제에 대한 실무협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

<참고> 계약제도개선심의위원회 개요

<붙임> 2010년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계획

기획재정부 대변인

- 국가계약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요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「계약제도개선심의위원회」 구성
  - 「계약제도개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(훈령)을 제정하여 동 위원회 설치근거 마련

< 계약제도개선심의위원회 위원 >

구 분	성 명	소속 / 직위	
위원장	이용걸	기획재정부 차관	
정부위원 (4)	유재훈	기획재정부 국고국장	
	정헌율	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	
	도태호	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	
	천룡	조달청 시설사업국장	
민간 위원 (7)	법조계	황정근	법무법인 김&장 변호사
		김대희	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
	학계 및 연구계	최민수	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
		김명수	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
		김한수	세종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
	업계	김영덕	대한건설협회 정책지원본부장
		정하영	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지원본부장